

[로스쿨 소식]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공고

I. 개요

1.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2017년 8월 27일(일)에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1) 원서접수 기간은 2017년 7월 4일(화), 09:00 ~ 7월 13일(목), 18:00이다. 원서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9개 지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2)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지난해 27만 원에서 2만 2천 원 인하된 24만 8천 원(전년대비 약 8.15% 인하)이며,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의 응시수수료 면제제도는 지속해서 시행된다.
- (3)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시험 개선계획에 따라 금년도 시험의 추리논증 영역은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의 비율이 조정되고, 논술 영역의 2문항 중 1문항은 <사례형>으로 출제될 예정이다.
- (4) 시험 종료 후 문제 및 정답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접수 및 심사를 통해 최종정답을 확정·발표한다.
- (5)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2017년 9월 19일(화)에 발표되며,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 (6)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은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로 제공되지만, 논술 영역의 답안은 추후 응시자가 지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하여 그 성적을 자체적으로 활용한다.

2. 법학적성시험의 결과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필수자료로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활용되며, 성적의 반영방법 및 비율 등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결정한다.

3. 2019학년도 시험부터는 수험생 진학준비 등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고자 7월에 실시될 예정이다(구체적인 일정 2018년 2월 공지).

II.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시험의 성격 및 목적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시험 성적의 활용 및 응시 자격

- (1)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유효하며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학전형 필수요소 중 하나로 활용된다.
- (2)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와 ‘2018년 2월 졸업예정자(학위취득 예정자 포함)’이다.
- (3) 시험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3. 시험 일시 및 장소

- (1)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2017. 8. 27.(일)에 실시함.
※ 2019학년도 시험부터는 수험생 진학준비 등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고자 7월에 실시될 예정이다(구체적인 일정 2018년 2월 공지).
- (2) 시험은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지구에서 실시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하나의 지구를 선택해야 한다.
-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은 불가하며,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서울'의 경우, 수험생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시 1지망과 2지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별 수용인원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 수험표 출력 시(8.8.~27.) 배정된 학교 확인

4. 시험영역 및 시험시간

- (1) 법학적성시험은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 논술 영역으로 구성됨.
 (2)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교시	시험영역	문항 수	시험시간	문항형태
1	언어이해	35	09:00~10:20 (80 분)	5지선다형
2	추리논증	35	11:00~12:50 (110분)	5지선다형
점심시간			12:50~13:50	
3	논술	2	14:00~16:00 (120분)	서답형
계	3개 영역	72문항	310분	

-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문제지는 홀수형과 짝수형으로 제작되며,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에게는 홀수형, 짝수인 수험생에게는 짝수형 문제지가 배부됨. 논술 영역의 문제지는 단일유형임.

※ [참고] 개선계획에 따른 2019학년도 시험의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교시	시험영역	문항 수	시험시간	비고
1	언어이해	30	09:00~10:10 (70분)	5문항·10분감소
2	추리논증	40	10:45~12:50 (125분)	5문항·15분증가
3	논술	2	14:00~15:50 (110분)	10분 감소
계	3개 영역	72문항	305분	5분 감소

- 시험 개선계획 발표 : '16. 12. 01.(목)

5. 출제 기본방향

(1) 공통 사항

-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한다.

(2) 언어이해 영역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독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한다.

(3) 추리논증 영역

- 사실, 주장, 이론, 해석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추리(reasoning) 능력과 논증(argumentation) 능력을 측정한다.

(4) 논술 영역

- 예비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분석적·종합적 사고력과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한다.
- 2문항 중 1문항을 사례형으로 출제함으로써 법학 교육 및 법조현장에서 강조되는 방식의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한다.

6. 원서접수 및 응시수수료

(1) 원서접수

- 원서접수 기간은 7월 4일 09시부터 7월 13일 18시까지이며,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홈페이지 주소 : <http://www.leet.or.kr>]
- 기간 내에는 24시간 내내 접수 가능, 기간 종료 후 접수 불가

(2) 응시수수료

-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24만 8천 원임(전년대비 약 8.15%, 22,000원 인하)
- 응시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4) 응시수수료 반환

-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아래 기준에 의하여 응시수수료를 반환함.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1) 접수기간 내 취소신청 :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 접수마감일 7월 13일까지 : 100% (248,000원)

2) 접수기간 이후 취소신청

- 1차 -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간 (7월 14일~20일) : 60% (148,800원)
- 2차 - 1차 기간 다음날부터 14일간 (7월 21일~8월 3일) : 50% (124,000원)
- 3차 - 2차 기간 다음날부터 시험 4일 전까지 (8월 4일~23일) : 40% (99,200원)
- 시험 3일 전부터 (8월 24일~) : 0% (반환불가)

7. 문제 및 정답공개, 성적발표

(1) 시험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홈페이지에 문제와 정답을 탑재하되 최종 확정된 정답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심사후 공개함.

(2) 시험 성적은 9월 19일(화) 오전 10시에 발표되며 수험생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하고 성적표를 출력할 수 있음.

- 언어이해, 추리논증 영역 성적으로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함.
-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며, 총점 및 원점수는 제공되지 않음.
- 논술 영역 답안은 추후 응시자가 지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그 성적을 활용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채점함.

Ⅲ. 논술 영역 「사례형」 예시문항

1. 다음 <사례>와 <보기>를 읽고 이어지는 물음에 순서대로 답하시오.

1-1. <사례>의 쟁점을 밝히고, 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해야 하는 세부 쟁점들을 그 논의의 필요성과 함께 열거하시오.

1-2. <보기>의 [1안], [2안], [3안] 중 하나를 해결 방안으로 채택하고, 채택한 방안이 적절한 이유를 위 세부 쟁점별로 논거를 제시하며 전개하시오.

1-3. 본인의 주장에 대해 가능한 반대 의견이나 입장을 설명하고 반박하시오.

1-4. 최종 결론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사례>

A국 공공기관은 채용 시험을 통해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대체로 매년 응시자의 3%만이 합격한다. 채용 시험의 합격은 직업적·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므로, 능력과 노력에 따른 합당한 보상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응시자들의 사회적 배경, 즉 부모의 직업·수입·학력과 당사자의 출신 지역 등을 계량화하여 분석·비교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대다수 합격자의 '사회적 배경 지수'가 불합격자의 평균적인 사회적 배경 지수를 훨씬 상회하였고, 또 이러한 격차는 계속 확대되어 왔다. 그 때문에 이런 채용 방식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들끓게 되자, A국 정부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보기>의 안들이 제시되었다.

<보기>

[1안] 모집 인원 전체를 채용 시험 성적순으로 채용하되, 사회적 하위 계층의 지원자에게 사회적 격차를 보정할 수 있는 수준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2안] 모집 인원의 80%는 채용 시험 성적순으로 채용하고, 나머지 20%는 채용 시험 성적, 최종 학력, 학교 성적, 봉사 실적,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 고려한 심사를 통하여 채용한다.

[3안] 모집 인원의 80%는 채용 시험 성적순으로 채용하고, 나머지 20%는 사회적 하위 계층 지원자 중 최소한의 직무 수행 기본능력을 고려하고 봉사활동 경력 등에 나타나는 공공적 지향과 태도를 평가하여 선발한다.

※ 2016학년도 논술 2번 변형

2. 다음 <사례>와 <보기>를 읽고 이어지는 물음에 순서대로 답하시오.

- 2-1.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쟁점 한 가지를 <보기>를 참조하여 밝히고, 그것이 왜 가장 중요한지 설명하시오.
- 2-2. 선택한 쟁점을 해결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에 입각하여 쟁점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논증하시오. (여러 개의 원칙을 제시해도 무방함) 2-3. 본인의 주장에 대해 가능한 반대 의견이나 주장을 설명하고 반박하시오.

<사례>

매너가 중시되는 야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 불문율이 존재한다. 만약 상대가 매너에 벗어나는 행위를 할 경우 투수가 빈볼(고의로 상대 타자 몸을 겨냥해서 던지는 공)을 던져서 응징하는 것 또한 흔히 인정되는 불문율이다. 투수의 빠른 공을 맞은 타자는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2016년 9월 1일 열린 甲 팀과 乙 팀의 경기에서 빈볼이 등장했다. 빈볼 상황은 다음과 같다.

그 전날 경기에서 甲 팀의 선수 A는 5회까지 팀이 9:2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乙 팀을 상대로 도루를 했고, 이날은 8:0으로 앞선 1회부터 도루를 했다(야구에서는 큰 점수 차이로 이기고 있을 때는 도루를 하지 않는 것이 매너다). 이날 경기에서 A는 3회와 6회 두 차례에 걸쳐 공에 맞았는데, 특히 6회 맞은 공은 누가 봐도 명백한 빈볼이었다. 乙 팀의 투수 B가 처음 두 개의 공을 몸 쪽에 바짝 붙인 위협구로 던진 데 이어, 세 번째 공으로 기어이 A를 맞추었기 때문이다. 화가 난 A는 B에게 곧장 달려 나갔고, 甲 팀과 乙 팀의 선수 전원 이 경기장에서 몸싸움(벤치클리어링)을 벌이게 되었다. 심판은 B를 퇴장시켰고, 乙 팀의 감독 Y는 甲 팀의 보복성 빈볼을 우려하여 자기 팀 주축 선수들을 교체했다.

빈볼을 누가 지시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선수단을 장악하고 있는 Y가 정황상 유력해 보이나,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있다. 빈볼을 지시한 사람을 밝히지 않는 것 또한 야구계의 오랜 관습이기 때문에 누군지 드러낼 가능성은 극히 낮다. 다만 B가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며, 어쨌거나 빈볼을 던진 건 B임에도 불구하고 B를 비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부는 오히려 매너 없는 행위로 상대를 자극한 A의 잘못이 더 크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야구 리그를 총괄하는 백구야구위원회에서는 B에게 위원회 벌칙내규에 의거하여 제재금 300만원과 출장정지 7경기의 제재를 부과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선수단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Y에게 벌칙내규를 적용하여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하고 乙 구단에게도 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보기〉

甲 팀 감독 X

첫 경기에선 5회 9:2로 앞선 상황에서 도루를 했고, 두 번째 경기에선 1회 8:0에서 도루를 했다. 이게 예의를 저버린 야구인가? 첫 경기는 결국 연장전까지 갔고, 두 번째 경기는 겨우 1회였다. 그리고 선수가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 아무리 야구에서 관습이나 불문율이 중요하다 해도 선수의 몸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빈볼은 또다시 보복성 빈볼을 부를 뿐이다. 내 선수가 위험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어떤 감독이 가만히 있으려 하겠는가? 상대 팀에 피해를 주면 자신의 팀에도 피해가 간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

乙 팀 감독 Y

야구는 전쟁이 아니다. 매너를 갖춘 스포츠다.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팀의 승리나 개인 기록만을 위해 경기하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결국 양 팀 다 손해를 본다. 팬들에게도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느 감독이 빈볼을 던지라고 하겠는가? 아마 B도 실수로 그랬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결론에 형평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까지는 이런 결론을 내린 적이 없지 않았나? 앞으로 빈볼 논란이 생기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모두 감독의 지시로 판단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뜻인가?